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68 제출연월일: 2024. 12. 1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휴업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)	제41조(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)
①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	①
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	
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	
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	
신고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휴업기간</u>
	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
	하지 아니하다.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